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768
----------	-------

발의연월일 : 2025. 7. 28.

발 의 자 : 김정호 · 이연희 · 박희승
신영대 · 임미애 · 윤후덕
전진숙 · 박 정 · 허종식
조계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출범 당시에는 대통령 소속의 장관급 기관이었으나, 정부부처 개편을 통해 국무총리 소속의 차관급 기관으로 조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반면 미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은 관계 행정부처로부터 독립된 기관 형태로 원자력 규제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IAEA의 권고 대비 전문성과 독립규제기관의 기능이 미흡하여 국제 규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형식적인 의사결정 구조와 사업자 편의 위주의 행정 운영으로 인해 기술 심사 역량이 부족하고 국민적 신뢰도가 미흡하다는 시민사회의 꾸준한 지적이 있어 왔음.

이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현재 2인에서 5인으로 늘리고 사무처장을 위원 겸직에서 배제함으로써 상임위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문성을 확보하여 원자력 안전관리 대책 마련의 효율성을 높

이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안 제4조 등).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위원장을”을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로, “위원장 및”을 “위원장, 부위원장 및”으로, “1명은”을 “3명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은”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으로, “한다”를 “보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 중 “위원은”을 “비상임위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위원장은”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으로, “상임위원인 위원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3명의 상임위원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며, 나머지 4명의 위원은”을 “임명하며, 나머지 4명의 비상임위원은”으로 한다.

① 상임위원은 원자력안전 관련 분야에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원자력 관련 박사, 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유자격자로서 핵시설

의 건설 및 운영, 방사선안전, 핵폐기물 및 해체, 핵 통제, 비상대응 등의 실무에 15년 이상의 풍부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사람으로서 원자력안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제4항 중 “상임위원인 위원이”를 “부위원장이”로, “상임위원이”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상임위원인 위원이 겸임한다”를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u>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u>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 <u>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u> <u>을</u> ----- ----- <u>위원장, 부위원장 및</u> ----- <u>3명은</u> -----.
② <u>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u>	② <u>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u> <u>한 상임위원은</u> ----- <u>보</u> <u>한다.</u>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의 임명·위촉 등) <u><신설></u>	제5조(위원의 임명·위촉 등) ① <u>상임위원은 원자력안전 관련 분야에</u> <u>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u>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u> <u>에서 임명한다.</u> 1. <u>원자력 관련 박사, 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유자격자로</u> <u>서 핵시설의 건설 및 운영,</u> <u>방사선안전, 핵폐기물 및 해</u> <u>체, 핵 통제, 비상대응 등의</u> <u>실무에 15년 이상의 풍부한</u> <u>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u> 2. <u>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u>

① 위원은 원자력안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원자력·환경·보건의료·과학기술·공공안전·법률·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인 위원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나머지 4명의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생략)
제6조(위원장) ① ~ ③ (생략)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위원이 모두 부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사람
으로서 원자력안전에 관한 식
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비상임위원은-----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3명의 상임위원은-----
-----임명하
며, 나머지 4명의 비상임위원은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6조(위원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생략) 제17조(사무처) ① (생략)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u>상임위원인 위원이 겸임한다.</u> ③ (생략)	----- ----- -----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사무처)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u> ③ (현행과 같음)
---	---